

#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른 중대(산업·시민)재해처벌법 요약

## 【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】

### □ 목 적

-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·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

### □ 적용대상

- (의무주체)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도 적용 대상  
- 공공부문 의무이행 주체(경영책임자)는 중앙행정기관 장 등 기관의 장  
※ 사업 경영 총괄 책임자에게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

구 분	의무이행주체(경영책임자)
민 간	사업주, 경영책임자 등
공 공	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공기업의 장, 공공기관의 장

- (보호대상) 종사자(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) 및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

### □ 중대재해

#### 중대재해 : 중대산업재해 + 중대시민재해

구 분	중대산업재해	중대시민재해
정 의	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	원료,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, 공중교통수단의 설계·제조·설치·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
기 준	사망	1명 이상
	부상	동일사고 2명 이상 (6개월 이상 치료要)
	질병	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
보호대상	종사자(공무원, 근로자, 노무제공자)	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

❖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('22. 1. 27.)에 따라 소방 안전 보건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대응하고자 함

□ **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(안전 및 보건 확보)**

○ (중대산업재해)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·제5조

법 제4조		의 무 사 항_13가지(시행령 제4조, 제5조)
1	안전·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	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·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
		② 안전·보건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
		③ 유해·위험요인을 확인·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
		④ 안전·보건에 관한 인력·시설·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
		⑤ 안전·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, 업무수행 평가
		⑥ 안전/보건관리자,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
		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·이행
		⑧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
		⑨ 도급·용역·위탁 시 종사자 안전·보건 확보 기준·절차·마련, 이행여부 점검
2	⑩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	
3	⑪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가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	
4	관리상의 조치	⑫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, 이행 여부 점검·보고,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
		⑬ 안전·보건교육 실시확인,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

○ (중대시민재해)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·제5조

법 제9조		의 무 사 항_10가지 (시행령 제10조, 제11조)
1	안전·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	①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업무 수행하고 필요한 예산 편성·집행
		② 안전계획 수립·이행(인력확보, 안전점검, 유지관리 포함)
		③ 연 2회 이상 인력, 예산, 안전점검, 안전계획 이행점검·보고
		④ 이행·점검 보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
		⑤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(점검·신고·개선, 사고 시 조치, 대피훈련)
		⑥ 도급·용역 위탁 시 -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·절차 마련 -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- 연 1회 이상 이행점검
2	⑦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	
3	⑧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가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	
4	관리상의 조치	⑨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, 이행 여부 점검·보고,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
		⑩ 안전·보건교육 실시확인,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

□ **처벌규정** : “안전 및 보건 확보”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

구분	사업주·경영책임자 등	법인·기관 양벌규정
사망자	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	50억원 이하의 벌금
부상·질병자	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	10억원 이하의 벌금

※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·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,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